

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제34조 및 제 35조,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.
2.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.
3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.

제3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지와 같다.

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4조의 의견진술 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전통지 및 의견진술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5조 (납부통지)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“별지 제1호 서식” 및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·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.

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(이의신청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“별지 제6호 서식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과태료의 귀속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계룡시 수입으로 한다.

제8조 (준용규정)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

(제3조 관련)

(단위:만원)

위 반 내 용	근 거	과 태 료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민건강증진법 법 제34조제1항제1호	100	200	300
2.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	법 제34조제1항제2호	100	200	300
3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 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4조제2항제1호	50	100	200
4.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34조제2항제2호	50	100	200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수 신
제 목 : 과태료 처분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()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“끝”

[별지 제2호 서식]

제 호	과태료납부통지서				
계룡시 면.동 리 번지 납					
위반사항					
관	임시적 세 외 수 입	항	잡수입	목	과태료
납부기한		년 월 일			
금 액		원			
위의 과태료를 계룡시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계룡시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인					

제 호	과태료납부통지서				
계룡시 면.동 리 번지 납					
위반사항					
관	임시적 세 외 수 입	항	잡수입	목	과태료
납부기한		년 월 일			
금 액		원			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(수납기관용)					

제 호	과태료납부통지서				
계룡시 면.동 리 번지 납					
위반사항					
관	임시적 세 외 수 입	항	잡수입	목	과태료
납부기한		년 월 일			
금 액		원			
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. 년 월 일 금고 인 귀하					

제 호	과태료납부통지서				
계룡시 면.동 리 번지 납					
위반사항					
관	임시적 세 외 수 입	항	잡수입	목	과태료
납부기한		년 월 일			
금 액		원			
위의 금액을 영수함. 년 월 일 금고 인 귀하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				
제 호				
납 부 의무자	① 성 명	(한 자)	③주민등록 번 호	
	② 주 소			
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				
⑤ 위 반 사 항				
⑥ 과태료금액			⑦ 당 초 납부기일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계룡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계 룡 시 장

[별지 제6호 서식]

제 호 수 신 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.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3항과 관련됩니다. 2.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계룡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
	주 소			
과태료 납부 통 지 일 자			과 태 료 금 액	
과태료 처분 부 과 관 청			이의제기 년 월 일	
이 의 제 기 내 용				

- 첨 부 1.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
 2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.

계 룡 시 장